

신고센터 소개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
이제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에
신고하세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란 무엇인가요?

「공인중개사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라, 공인중개사법 전반 및 거래신고법 내 주요 불법행위로서 총 50개 행위*를 통틀어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라 합니다.

* 자격증·등록증 대여, 무등록 중개, 이중계약서 작성, 중개대상을 설명 불성실, 집값담합, 업·다운계약서 등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를 하게 되면?

위반행위에 따라 누구든지 징역 또는 벌금, 과태료 처분에 처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는 추가적으로 자격의 정지·취소, 등록의 취소 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위반행위별 처벌조항은 신고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대상 「공인중개사법」 제7조, 제9조, 제19조, 제33조제1항 제8,9호, 제33조제2항, 제48조제2호를 위반한 자

※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신고(고발)건

금액 1건당 50만원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46조, 시행령 제36조의2, 시행규칙 제28조

신고·조회 안내



신고방법

인터넷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로 접속 후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클릭
(www.budongsan24.kr)

이메일

cleanbudongsan@reb.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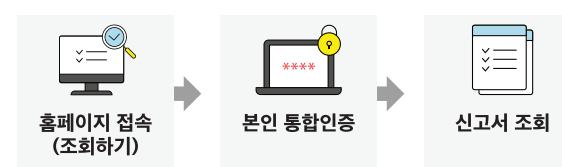
우편

(41068)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신고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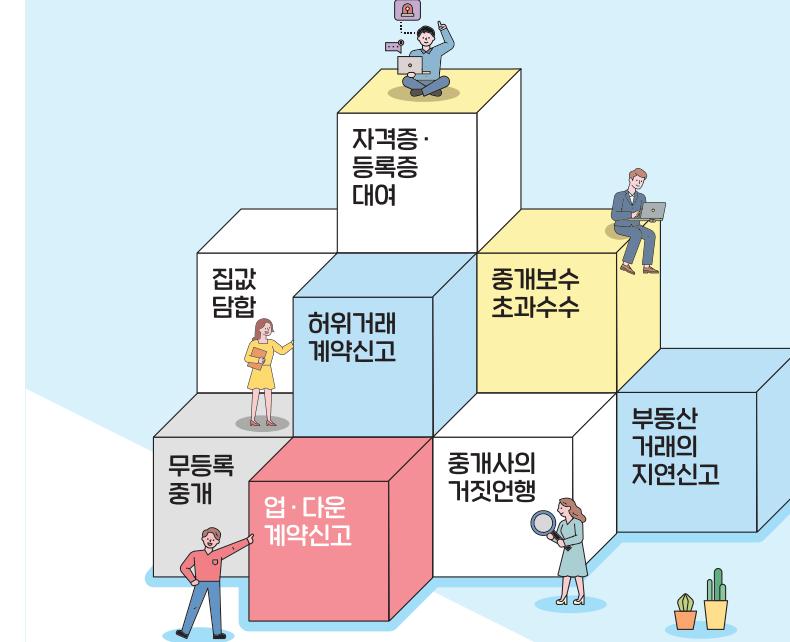
조회하기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를

목격하셨다면
신고센터로

새로운 시작
新GO!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로 접속하셔서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클릭”

N www.budongsan24.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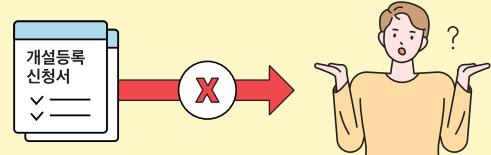
콜센터 1644-9782



공인중개사법 주요사례

1. 무등록 중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없이 중개업을 하거나,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가 개설등록을 신청한 행위



위반행위
처벌조항

제9조
제48조제1호

2. 자격증·등록증 대여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 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



자격증 양도:
양수·대여·알선

자격증 양도

대여료

등록증 양도:
양수·대여·알선

대여료

3. 중개보수 초과수수료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는 정액의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컨설팅
비용 등의 다른 명목으로 수수료를 지급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위반행위
처벌조항

제33조제1항제3호
제36조제1항제7호, 제38조제2항제9호, 제49조제1항제10호

4. 중개사의 거짓언행

중개물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등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위반행위
처벌조항

제33조제1항제4호
제36조제1항제7호, 제38조제2항제9호, 제49조제1항제10호

5. 집값담합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의 행위



위반행위
처벌조항

제33조제2항제3호
제48조제4호

6. 중개대상물 설명 불성실

중개대상물의 상태, 권리관계, 이용제한사항 등을
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은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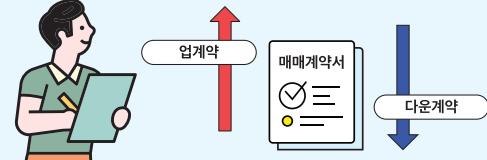
위반행위
처벌조항

제25조제1항
제36조제1항제3호, 제51조제2항제1의5호

거래신고법 주요사례

7. 업·다운 계약신고

거래신고시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신고를 하는 행위



위반행위
처벌조항

제3조
제28조제2항제1호 및 제3항

8. 허위거래 계약신고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고가의 허위 계약 신고 후 계약을 해제하는 행위

전용면적(m ²)	계약일	해제여부	해제일자	거래금액
84	2X.3.1	O	2X.10.1	3.8억원
84	2X.2.1			3.1억원
84	2X.1.1			3.0억원

위반행위
처벌조항

제4조
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9. 부동산 거래의 지연신고

부동산 거래계약의 체결일(해제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여 신고관청에 신고하는 행위



위반행위
처벌조항

제3조, 제3조의2
제28조제2항제1호, 제1의2호 및 제3항